

1.2. 교육협력위원회규정

2006.11.02 제정

2014.01.07. 개정

2020.09.01 개정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수의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이라는 BK21 FOUR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대학원 교육과정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원교육위원회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명칭) 본 위원회의 명칭은 ‘BK21 FOUR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 교육협력위원회’(이하 위원회)라 한다.

제 3조 (위원장)

- (1)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단장이 임명한다.
- (2)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제 4조 (구성)

- (1) 본 위원회는 5인 내외의 연구단 소속 교수로 구성한다.
- (2)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연구단장이 임명한다.
- (3)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의대 교무부학장을 위원회 회의에 초빙할 수 있다.

제 5조 (임기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 6조 (기능) 위원회는 연구단의 대학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연구단 내 실행을 관장하며, 학사위원회에 그 실행을 건의한다.

- (1) 대학원 교과과정 운영 및 개편
- (2) 대학원 학생지도, 논문지도위원회 및 학위논문심사 과정
- (3) 대학원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 및 평가

(4) 기타 대학원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

제 7조 (운영세칙)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별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◁ 부 칙 ▷

(1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(2006.11.02.)로부터 시행한다.